

[별표 5] <개정 2004.4.20, 2006.5.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관련)

1. 시설기준

가. 안전거리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4 제1호 가목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나. 용기보관실

(1)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

(2)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 부지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고, 용기보관실 바닥은 운반차량중 적재함의 최저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해상에서 가스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기보관실은 해상구조물 또는 선박에 설치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용기보관실 바닥을 운반차량중 적재함의 최저높이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용기보관실에서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경보기는 용기보관실에 설치하되 분리형으로 설치할 것

라. 조명등

용기보관실내에는 방폭등외의 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마. 전기설비의 방폭

용기보관실의 전기설비는 방폭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전기스위치는 용기보관실의 외부에 설치할 것

바. 용기보관실의 온도상승방지 조치

용기보관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용기에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방호조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4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주차장

- (1) 판매업소 및 영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고, 용기를 자동차에 싣거나 자동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용기보관실 주위에 필요한 부지(판매업소의 경우에는 11.5㎡ 이상)를 확보할 것
-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자. 용기의 취급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이동시에는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손수레를 이용할 것

차. 가스전용운반자동차

판매업소 및 영업소에는 판매계획에 따른 판매물량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의 가스전용운반자동차(4륜차 이상)를 확보할 것. 다만, 도서지역으로서 가스전용운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가목 내지 차목에서 정한 기준외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 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의 (3)·(11)(나) 및 (12)(가)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별표 7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에 의할 것

타. 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나목(2)본문·아목(1) 및 타목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기술기준

가. 용기의 안전유지

- (1) 충전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의 누출여부, 검사기간의 경과여부 및 도색의 불량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불량충전용기는 그 충전업소에 반송할 것
- (2)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운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

나. 용기보관실의 안전유지

- (1) 용기보관실 주위의 2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취급을 하거나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 (2) 용기보관실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용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 (3) 용기보관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외에는 두지 아니할 것
- (4) 용기는 2단 이상으로 쌓지 아니할 것. 다만, 내용적 30 L 미만의 용접 용기는 2단으로 쌓을 수 있다.

다. 공급자의무

- (1)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수요자의 시설이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검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용기를 사용시설에 접속(내용적이 20 L 미만인 용기 및 옥내외를 이동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요자의 시설에는 가스공급을 하지 아니할 것
- (2) 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별표 8에 의한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하지 아니할 것
- (3) 가스공급은 별표 17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에 의할 것

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 및 영업소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기준외에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기술기준에 의할 것